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호봉 산입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139만9천9백원”을 “144만 8천9백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휴직·정직 또는”을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휴직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의 90일만 산입하되, 승급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의2제2항 중 “8만원으로”를 “8만2800원으로”로, “7만8300원”을 “8만1000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진한 경우”를 “승진(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진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860만7천원”을 “890만9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44만2천원”을 “977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38만

6천원”을 “868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977만7천원”을 “1,011만 9천원”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 특례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전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의4호의 개정 규정에도

신·구조문대비표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② 삭제 ③·④ (생략) ⑤ <u>별정직공무원인 동장·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u> ⑥ ~ ⑩ (생략) ⑪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생략)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u>139만9천9백 원</u> 을 뺀 금액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144만8천9백 원</u> -----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 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 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확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확정한다.

③ ~ ⑤ (생략)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의3. (생략)

<신설>

-----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또는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

-----.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휴직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의 90일만 산입하되, 승급기간에

4. ~ 7. (생략)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8만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7만83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 6. (생략)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 7.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8만2800원으로 ----- 8만1000원 -----

-----.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

-- 승진(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한 경우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860만7천원</u> 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 ----- ----- <u>890만9천원</u> ----- -----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944만2천원</u>	2. ----- ----- <u>977만2천원</u>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838만6천원</u>	3. ----- ----- <u>868만원</u>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977만7천원</u>	4. ----- ----- <u>1,011만9천원</u>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② (생략)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신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신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